여성 국방의무의 정치철학적 기초: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공정원리를 중심으로

*** 인용하기에는 완성되지 않은 글입니다. 참고문헌 아래 부분에 연구의 동기가 있습니다. ***

김동일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요약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여성 국방의무 문제) 이 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의무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의무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를 검토하고 각 이론이 공히 전제하지만 증명하지 않는 도덕적 사실을 규명한 후 그 사실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공정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 여성 국방의무 문제의 본질적 특성과, 권리와의 상응관계를 통한 의무의 개념적 분석을 예비적으로 고찰한다.

주제어: 의무, 국방의무, 여성,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정원리

I. 서론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현재 남성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병역법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는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만 이행할 수 있다. 즉,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의 평등 문제로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남성과 그 의무를 선택적으로만 이행할 수 있는 여성의 평등문제로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남녀평등의 문제로서 이해하는 것은 분배정의의 문제이다. 즉,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사회적 짐을 국가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검토하는 문제이다. 이 때 분배의 기준으로서 당사자들의 자유 및 권리,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 또는 당사자들의 능력 등이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다.[1)]

둘째, 여성 국방의무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로서 다뤄질 수 있다.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주체로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임에 반해, 의무의 문제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이행

1) 평등문제에 집중해서 여성의 병역의무 문제를 논의하는 입장의 정리는 다음을 참조. 김엘리 (2016).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의 병역의무를 평등문제로 접근한 연구(의 정리)는 다음을 참조. Seungsook Moon (2002); 윤진숙 (2007). 공화주의 입장에서 여성의 병역의무를 평등문제로 논의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Snyder, R. C. (1999); Snyder. R. C. (2003).

해야 하는 의무로서 인식한다는 뜻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여성 국방의무 문제가 의무의 문제로서 검토될 때 논의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던져진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치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때 제시될 수 있는 정치철학적 근거는 정치철학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평등 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로서 논의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를 검토하면서, 각 입장이 전제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사실을 규명하고 그 도덕적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공정원리를 주장한다. 다음 두 절은 예비적 논의로서 의무의 문제로서 다룰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보다 더 분명하고 정교하게 논의하기 위해 그 문제의 본질적 특성과, 권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각각 알아본다.

1. 여성 국방의무 문제: 의무 문제로서의 본질적 특성

이 글에서 다룰 여성 국방의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글은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여성인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국방의 의무를 어떤 근거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로서 다룬다. 여성을 시민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근대 주권 국가의 존재,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남성의 존재이다. 우선 여성을 시민으로서 상정하면 주권을 가진 국가와 그 권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가 분배의 주체가 되는 분배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상정된 개인 행위자로서 여성인 시민에게 주어진 국방의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무 당사자인 시민으로서 여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안점이다.

그리고 여성을 시민으로서 인식하면 시민의 특성으로서 근대 이후 주권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으로서 여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은 그러한 개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이 그러한 근대적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주권 국가의 권력과 관련해서 여성의 국방의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자 시민인 여성이 한 행위자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룬다는 뜻에서 논의의 적용범위가 근대 이후 주권국가의 시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고대 아테네나 고대 로마에 각각 근거를 둔 시민 공화주의나 고전 공화주의 입장을 검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논의의 적용범위가 근대 이후 주권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을 시민으로서 인식하고 국방의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남성의 반대로서 여성이 가지는 의무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인 여성의 의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시민의 의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는 남성인 시민의 의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방의무에서 면제되어 있는 성별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글은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인 국가 권력의 합법성 문제로 다

루지 않는다. 국가 권력의 합법성 이론은 보통 국가의 합법성이 확보되면 시민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사항들에 순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여성 국방의무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이론들은 (아래에서 논의하듯이) 국가의 합법성과 상관없이 의무의 정치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국가 권력의 합법성 문제로서 다룰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셋째,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국가 권력의 합법성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무를 '내용독립적'(content-independent) 또는 '우선적인'(preemptive) 의무로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내용독립적' 의무란 의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우선적인' 의무란 의무 이행 당사자가 의무의 내용에 대한 어떤 도덕적 내지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즉 개인의 판단에 '우선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의무를 말한다(Raz 1986: 46)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이나 이행 당사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합법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여성 국방의무 문제는 국가 권력의 합법성과 상관없이 다루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독립적' 또는 '우선적인' 의무로서 다루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이 글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치철학적 근거를 논의한다는 뜻에서 의무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국방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의무를 얼마나 많고 적게 또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논의이다. 그러나 의무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의무 자체를 왜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의무 당사자가 처해있는 역사적,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역사 속에서 여성이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남북한 분단 상황, 군사력의 기술적 발달, 그리고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왜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즉 의무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위의 구체적 조건들을 다룰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무 자체의 개념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즉, 국방의 의무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반대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검토가 다음 절의 내용이다.

2. 권리를 통한 의무의 개념적 이해

의무의 개념적 분석에 대한 이해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권리의 개념을 토대로 그것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호펠드는 권리의 형태로서 네 가지를 구분한다. 그것은 주장(claim)[2], 특권(privilege), 권한(power), 그리고 면책(immunity)이다(Hohfeld 1917). 첫째, 주장(claim)이란 상대방에게 의무를 유발시키

2) 호펠드는 권리로 번역되는 right을 말했으나 이 글에서는 그 현대적인 형태로서 웨나가 설명한 주장(claim)을 권리의 첫 번째 형태로 이해한다. Wenar, L. (2005).

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은 계약에 따라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한 후에 계약에 정해진 대로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때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상관적인(correlative) 개념으로서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주장의 반대 개념, 즉 그 상반된(opposite) 개념은 주장의 부재이다. 그리고 주장 형태의 권리는 보호(protection), 제공(provision), 그리고 수행(performance) 등의 기능을 한다(Wenar 2005).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주장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면 그녀는 정당한 급여를 보호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특권(privilege)이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운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에 상반되는 개념은 의무(duty)이다. 즉,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면허증이 없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특권에 상관적인 개념은 주장의 부재이다. 즉, 한 사람이 특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의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 또는 교통 당국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특권은 면제(exemption) 또는 선택(discretion)의 기능을 가진다(Wenar 2005).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셋째 권리의 형태는 권한(power)이다. 권한이란 상대방의 특권이나 주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로서의 특권을 발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심판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권이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력하다. 즉, 권한의 상반된 개념은 무력(disability)이다. 무력은 특권의 상반 개념으로서 의무와 다르다. 의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부재를 뜻할 때 무력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말한다(Hart 1961:69). 그리고 심판이 권한을 행사하면 선수들은 그에 상관적인 개념으로서 책임(liability)을 가지게 된다. 즉, 심판의 권한 행사에 따라서 선수들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권한은 인허가(authorization)의 기능을 한다(Wenar 2005). 예를 들어, 권한을 가진 심판은 선수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페널티킥이나 프리킥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권리의 네 번째 형태는 면책(immunity)이다. 면책이란 상대방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보장된 교수는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그 교수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그 교수를 향해 다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즉, 대학 당국은 면책의 권리를 가진 정년 교수를 향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면책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본인은 특권과 주장을 포기하고 주어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면책의 상반된 개념은 책임이고 상관적인 개념은 무력이다. 그리고 면책의 기능은 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 제공, 그리고 수행 등이다(Wenar 2005). 예를 들어, 정년 교수는 면책의 권리를 통해 교수로서의 지위를 보호 또는 보장받는다.

이상과 같이 권리의 네 가지 형태를 알아보고 그에 상반된 개념과 상관적인 개념을 알아봤다. 그러나 호펠드의 권리 개념분석은 의무 개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 월드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펠드의 분석을 도덕적 영역에 적용할 때 우리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주장이 도덕

적 의무에 대해서는 공허하거나 어떤 것도 결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Waldron 1984: 8) 그러나 이 글은 권리의 형태를 토대로 의무의 형태를 알아본다. 즉, 권리에 상응하는(corresponding) 개념으로서 의무의 형태를 이해한다.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란 권리가 부재할 때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의무를 가진다는 뜻에서 상관적인 것도 아니다.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의무란 동일한 행위자가 하나의 권리를 가지면 그 권리와 함께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의무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권리에 각각 상응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장으로서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 개념은 요구(demand)라는 형태를 가진다. 즉, 요구로서의 의무란 요구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자신의 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인이 계약서를 통해 요구한대로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요구는 주장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상응하는 의무이다.

둘째, 특권의 형태를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는 책무(obligation)의 형태를 가진다. 책무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특권의 형태로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반대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다. 달리 말해, 특권은 책무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책무는 특권과 함께 상응하며 동시에 존재한다.

셋째, 권한의 형태를 띠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는 공무(trust) 또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공무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나 권한을 부여받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에서 심판은 선수들이 가입되어 있는 축구협회로부터 심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공무라는 형태의 의무를 가진다. 심판은 권한으로서의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공무라는 형태로서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는 권한과 상응한다.

넷째, 권리의 마지막 형태로서 면책에 상응하는 의무는 직임(liability)의 형태를 띤다. 직임이란 면책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년 교수는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나 그 교수는 면책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정년 교수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직임의 의무는 면책의 권리에 상응한다.

<표 1> 권리와 의무의 개념적 관계

권리	**주장**	**특권**	**권한**	**면책**
상반	주장 없음	의무	무력	책임
상관	의무	주장 없음	책임	무력
상응 **(의무)**	**요구**	**책무**	**공무**	**직임**

이렇게 주장, 특권, 권한, 그리고 면책으로서의 권리에 각각 상응하는 요구, 책무, 공무, 그리고 직임의 형태를 띠는 의무는 아래에서 검토하게 될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가 각각 말하는 자유에 대한 권리에 조응하는 의무로서 이해된다.

3. 자유주의적 정당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절대왕권, 선천적 계급사회, 그리고 완전주의적 국가의 간섭 및 통제 등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권리와 접목될 때 주장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정당하게 속한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장과 상관적인 의무로서 타인이나 국가는 개인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과 권한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자유주의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전체로서의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자유주의는 여성 국방의무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극단적 자유주의자라면, 예를 들어 무정부주의자라면,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국방의무를 정당화하기는커녕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소유권과 재산권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라면 그러한 주장에 상응하는 형태의 의무, 즉 요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주장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면 또한 모든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안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받는다. 이러한 형태의 의무가 가지는 강제성은 국가의 안전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강하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요구받는 의무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주의는 요구라는 형태로서 주어진 여성의 국방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다.[3)]

이 때 요구로서 주어지는 의무의 근거는, 자유주의에 따르면, 그 요구를 해오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계약으로부터 여성의 국방의무가 유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무의 근거로서, 그리고 여성 국방의무의 근거로서 계약은 모호하다.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이 가능한데, 첫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인가, 둘째, 자신이 참여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인가, 아니면 셋째, 계약의 내용 자체가 옳기 때문인가? 이 세 가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래에서는 각각 계약주의, 민주적 절차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등을 검토한다.

첫째, 홉스와 로크 등이 제안한 계약주의는 의무의 근거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있다고 말한다. 의무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국가인가 동료 시민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계약을 맺게 되었는가의 이전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계약 성립의 조건이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근거는 아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계약을 통해 요구되는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의무 이행의 조건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의무의 근거에 대한 계약주의 입장으

3)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징집제를 민주주의의 가치와 연결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며 권위주의적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조. Pfaffenzeller, S. (2010). 그러나 이 글은 징집제가 아닌 국방의 의무 자체를 논의하는 글이기 때문에 위 연구에 대한 논박 없이 자유주의가 여성의 국방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지만, 전제한다.

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서만 의무의 근거를 찾는다는 데에 있다. 즉, 계약주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다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주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계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요구해오는 국가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가, 또는 여성이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계약을 (국가 또는 동료 시민과) 맺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계약주의는 여러 형태의 계약, 즉 직접계약, 간접계약, 또는 유사계약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주의의 힘이자 기본 논거는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실제로 맺었다는 데에 있지 않다. 그것은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한 것은 계약의 필요성 또는 국가가 이행할 계약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Simmons 1993: 78; Hampton 1998: 66). 그러므로 계약에서 의무의 근거를 찾는 자유주의는, 계약이 의무의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하려면, 계약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없다면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약에 따른 의무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계약이 여성의 국방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입장은 민주적 절차주의이다. 민주적 절차주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옳다는 도덕적 사실에 호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사실의 근거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진 과정에 있다. 즉,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평등하게 계약에 참여했으며 어떤 당사자도 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에 불평등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의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Viehoff 2014).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국방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계약에 모든 당사자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방법이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계약에의 민주적 참여방법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조건일 뿐이다. 달리 말해, 평등한 참여자만이 계약에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계약의 구속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계약 참여방법이 아니고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의무의 근거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주의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계약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에 참여한 모든 동료 시민들의 평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론적 주장이다. 이것은 한 행위의 결과가 옳다면 그 행위를 실천해야 하며 그 행위의 결과가 옳지 않다면 그 행위를 실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은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옳다면 그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도 옳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결과주의에 따라서 의무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옳기 때문인가? 긍정

적인 답변은 도덕주의에서 나올 수 있다. 도덕주의에 따르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옳기 때문이다. 롤즈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정의의 원칙이 옳은 이유는 그 선택의 상황과 과정이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 페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은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들이 그것을 사랑하는가라는 딜레마와 같이 롤즈의 경우도 당사자들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공정한가 아니면 그 원칙이 이미 공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있다.'(Pettit 1991: 7).

이 딜레마는 풀기 쉽다. 우선,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상황에 있었다면 선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설명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Rawls 1971: 12) 당사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원칙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공정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가설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과연 따라야 하는가의 의무문제로 바라본다면, 롤즈는 명백히 그 의무의 근거가 당사자들이 원칙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원칙의 공정함에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정의 상태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을 국가가 채택하고 운영할 때 그것을 따라야 하는 시민의 의무는, 그 원칙들이 어느 정도 정의롭게 실천되고 있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연적인 의무이다(Rawls 1971: 334). 즉, 자유주의자인 롤즈도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의 근거는 원칙의 공정함에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의무의 내용으로서 국방의무 자체가 공정하다는 도덕적 사실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덕적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의 고유한 주장이 아니라 이미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간섭의 부재로서 자유, 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의 형태로서 가질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요구를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성의 국방의무를 요구라는 의무의 형태로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주의는 계약주의, 민주적 절차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등을 고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입장이 의도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내용, 즉 여성에게 요구되는 국방의무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유주의는 전제할 수밖에 없다.

4. 시민 공화주의적 정당화

시민 공화주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유래하고 현대에 와서 샌들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 기반을 둔 시민 공화주의적 자유는 곧 참여의 자유이자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의 자유이다. 정치적 간섭의 부재를 자유로 인식하는 자유주의와 상반되게, 시민 공화주의자는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 곧 자유라고 인식한다. 정치에 참여할 때에만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은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소속감, 전체에 대한 관심, 운명이 걸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 등'을(Sandel 1996/2012: 18)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을 가져야 한다. 샌들은 '시민의 덕과 정치 참여를 자유에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Sandel 1996/2012: 45).

정치참여로서의 자유는 특권의 형태를 가진 권리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노예나 여성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현대에 자연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시민들도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자유로운 시민에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 공화주의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특권에 상응해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형태의 의무를 가진다.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자유인으로서 가지는 특권이자 동시에 책무이다. 따라서 정치참여를 위해 덕성을 발휘하는 것도 자유인의 특권이자 책무이다.

시민 공화주의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책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를 자유로 인식하는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노예나 여성이 시민국가의 보호를 위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반면 자유인들은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듯이 현대의 시민 공화주의적 여성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책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시민 공화주의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무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권으로서 실천해야 한다.

정치참여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 공화주의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는 시민으로서 본성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에 있다. 시민 공화주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 시민의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특권이자 책무를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가 속한 국가의 참된 시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발휘해서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 여성은 비로소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정치참여 자체를 자유로 보는 시민 공화주의자에게는 특권이자 책무인 정치참여가 일의 전부이다. 정치참여를 수단으로 삼아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이 판단하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참여 자체가 공동선이며 좋은 삶이다. 말하자면, 시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자체가 시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가 추구하는 공동선이며, 동시에 각 개인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삶이다. 자유의 본질을 정치참여 자체에서 찾는 시민 공화주의 전통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 공화주의가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 자체를 공동선으로 본다거나 좋은 삶으로 본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의무 자체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의무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다면 공동선으로서도 좋은 삶으로서도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무 자체를 도덕적이라고 보는 이해는 시민 공화주의의 특허물이 아니다. 시민 공화주의의 특허물은 의무 이행이 시민의 책무이자 특권이라는 이해이다. 의무 자체가 도덕적이라는 이해는 앞에서 살펴본 자유주의도 전제하는 것이지만 다음에 살펴보게 될 루소 공화주의도 전제하는 도덕적 사실이다.

5. 루소 공화주의적 정당화

루소의 공화주의에서 사는 시민들은 자유로운 시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간섭이 부재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주의적 자유도 아니고 스스로를 지배하기 때문에 누리는 시민 공화주의적 자유도 아니다. 그것은 일반성이 확보된 자유의지에 따라서 입법된 법의 지배를 통해 모두가 모두를 지배하고 동시에 모두가 모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로서 완전지배(total domination)의 자유이다. 그것이 완전지배인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자기지배권을 완전히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지배가 자유인 것은 일반의지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의지를 따르기 때문이다(Rousseau 1762: Book I. Ch. 6). 따라서 그들은 자유롭도록 강제되기도 한다(Rousseau 1762: Book I. Ch. 7). 때로는 개인의 사적인 의지에 거슬러, 때로는 사회의 다수 또는 전체의지에 거슬러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지배를 받아 자유롭도록 강제된다. 자유롭도록 강제하는 형식적 주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 주체는 모든 시민이다.

그러므로 루소 공화주의 시민들은 일반의지에 근거한 법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모든 시민들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통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들은 시민들의 사적인 주장이나 어떤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시민들은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공무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법의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의 사적 자유 또는 다수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모든 시민들의 일반적 자유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공무를 가진다. 이러한 공무는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필요한 법을 일반의지에 따라서 입법하고 동시에 그 법에 구속됨으로써 이행된다. 즉, 모든 시민들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듯이 역시 이 공무도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일반의지에 따라서 입법된 법의 지배 아래 공무 형태의 의무를 가지는 루소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으로서 여성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강한 공무를 가지고 있다. 권한을 행사하는 권리의 자발성이 강한 것처럼 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강제성 또한 강하다. 그러나 공무는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권한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임과 동시에 자발적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공무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는 그것을 강제하는 법이 일반의지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일반의지는 자유의지와 일반성으로 구성되는데(김용민 2016: 176), 자유의지는 다시 자유와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성은 다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이며, 자발성은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성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성은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도덕성을 말한다. 따라서 법이 일반의지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 추구하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도덕성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의지에 근거한 법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의무의 근거는 그 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해

추구할 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법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의무의 근거로서 공정성 이외에 의무가 가져다주는 이익, 즉 자유의지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의무이행의 결과 아무런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의 이익은 의무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구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단적 가치만 가진다. 따라서 의무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의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의무의 이익은, 예를 들어 국방의무의 이익, 즉 국가의 안전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로 작동하기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거로 작동하기가 더 쉽다.)

루소 공화주의 시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공무 형태의 의무는 그 의무의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세워진 의무이기 때문에 특정인/단체의 주장이나 특권을 변경해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들에게 주어진다. 그 권한을 특정의 통치자들이 행사할 때에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통치의 기준인 법이 모든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 세워진 의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루소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의 의무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해서 세운 의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은 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 국방의 의무를 법의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의무의 공정성에 있다. 국방의 의무가 공정성을 잃고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면, 결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해 그 의무를 법에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공정하지 못한 의무는 공공성을 잃거나 자유로운 의지의 지지를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지를 근거로 하는 법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의무로서 성립될 수 없다. (위 괄호 안에서 설명했듯이 국방의 의무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국방의 의무를 도덕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공공성이 확보된 자유의지가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의무 발생의 필요조건은 의무 자체의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없으면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의 공정성은 루소 공화주의가 고유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들도 필요조건으로서 전제하는 도덕적 사실이다.

6. 고전 공화주의적 정당화

고전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그리고 루소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그것과 구분된다. 고전 공화주의적 자유는 비지배의 자유로 요약된다(Pettit 1999; Pettit 2012). 비지배의 자유는 (공정한) 간섭이나 제한을 허용한다는 뜻에서 자유주의적 자유와 다르고, 지배에 참여하는 것에서 자유를 찾는 시민 공화주의적 자유와도 다르고, 그리고 루소 공화주의 시민들이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법의 지배 아래 누리는 완전지배의 자유와도 다르다. 루소 공화주의자를 지배하는 법은 일반성이 확보

된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입법되어야 하지만, 고전 공화주의자를 지배하는 법은 공정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루소 공화주의자의 자유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지배하고 모두의 지배를 받을 때 실현되고, 고전 공화주의자의 자유는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정한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완성된다.[4)]

비지배의 자유는 면책 형태의 권리로서 행사된다. 한 사람이 비지배의 자유를 가지고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누구도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그 사람의 주장이나 특권을 무마할 수 없다(Pettit 1998: 86). 고전 공화주의자는 비지배의 자유에 대한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타인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상태를 제공받는다. 나아가 비지배의 자유를 누리는 고전 공화주의자는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직임 형태의 의무를 가진다. 비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을 발휘해 시민으로서 직임을 다해야 한다. 고전 공화주의 시민은 타인을 지배하지 않는 의무와 법의 지배만 받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직임을 다하는 시민들로 구성되는 고전 공화주의 사회는 비지배의 자유가 충만한 사회이다.

고전 공화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법에 포함된다면,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 법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직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와 그 누구의 권한 행사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지배의 자유를 보장받는 고전 공화주의 시민이 권리로서 가지는 면책은 자유주의자의 주장, 시민공화주의자의 특권, 그리고 루소 공화주의자의 권한 등에 비해서 자발성이 가장 약하다. 면책의 권리는 주장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타인의 주장이나 특권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기에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의 귀결로 주어질 뿐이다(Pettit 2012: 5). 면책의 자발성이 약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직임으로서의 의무가 가지는 강제성 역시 약하다.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시민이 그러한 자유를 제공받고 보호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임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여성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시민에 비해 가장 자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천할 것이며, 그런 뜻에서 국방의 의무를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전 공화주의 시민은 왜 시민적 덕성을 발휘해서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의 명령을 따

---

4) 김용민은 루소 공화주의가 시민 공화주의보다는 고전 공화주의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소가 말하는 시민적 자유는 시민 공화주의가 말하는 자기지배의 자유 개념과 유사하지만 루소가 궁극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자유는 '정치참여 없이도 향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참여보다 더욱 본질적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 공화주의자가 말하는 비지배의 자유 개념에 더욱 가깝다는 것이다. 김용민 (2016) 「루소와 공화주의」, p.188. 반면 페팃은 루소가 시민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완전지배는 '절대주의의 새로운 공동체적 형태'이며 하나의 몸을 이룬 인민은 입법가일 뿐 법을 견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전 공화주의와의 거리를 둔다(Pettit 2012:14-15). 루소 공화주의와 고전 공화주의 사이에 분명한 선긋기 작업은 다음을 참조. Pettit, P. (2013:169-203). 이 글은 루소가 의미하는 완전지배 개념이 모두가 모두를 지배함으로써 결국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다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자기지배 뿐만 아니라 비지배의 자유를 창출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지배 개념의 내용이 자기지배 뿐만 아니라 비지배의 내용과도 구분되며 이것은 각 입장이 가지는 자유개념의 본질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루소 공화주의를 시민 및 고전 공화주의와 구분될 수 있는 다른 입장으로 이해한다.

르는 직임을 다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법의 지배에 따라 직임을 다함으로써 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따르는 의무는 나중에 개인적 자유를 성취하는데 수단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지닐 뿐이다. 즉, 고전 공화주의는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제공하지만 그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법이 지배하는 조건으로서 법의 공정성을 전제하지만 그것(공정성)은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의 근거가 아니라 그 의무의 조건으로서 작동할 뿐이다. 법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그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 공화주의에 따르면,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마련되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여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고전 공화주의가 의무와 관련해서 제공하는 것은 의무의 조건으로서 의무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는 도덕적 전제뿐이다. 그러나 의무의 공정성은 고전 공화주의가 변별력을 가지고 제공하는 도덕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모든 입장들도 전제하고 있는 도덕적 사실이다.

7. 공정원리의 필연성

지금까지 이 글은 여성의 국방의무를 정당화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자유주의, 시민 공화주의, 루소 공화주의, 그리고 고전 공화주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글은 각 입장이 여성의 국방의무를 성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각 입장이 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 자체가 정당하다거나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에 따라서 간섭의 부재라는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상응하여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는 그것이 계약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의무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의 덕성과 정치참여가 곧 자유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시민 공화주의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책무이자 특권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 자체가 공동선이자 좋은 삶이라는 뜻에서 국방의 의무 자체는 도덕성을 가진다. 루소 공화주의의 시민은 일반의지의 실현으로서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즉 그 법에 포함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완전지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국방의 의무 자체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지배와 공정한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고전 공화주의자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면책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만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직임으로서의 의무도 가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때 주어진 의무는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모든 입장이 이구동성으로 국방의 의무가 정당하거나 도덕적이거나 공정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 입장들은 국방의 의무가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그것 자체로서 공정하다는 사실을 공정원리의 기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설명한다.

8. 결론: 연구의 의미

- 여성 국방의무 문제를, 평등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로 이해

- 권리의 형태와 상응하는 의무의 형태를 제시
- 각 이론의 자유 개념을 권리 및 의무의 형태와 조응 시켜 이해
- 각 이론이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의무 형태를 제공
- 각 이론의 한계 규명 (의무 자체의 정당성, 도덕성, 공정성 등)
- 여성 국방의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제의 정당화 제시

참고문헌

김엘리 (2016). “여성의 군 참여 논쟁: 영미 페미니스트들의 평등 프레임과 탈군사화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1). 151-152.

김용민 (2016). “루소와 공화주의” 『한국정치연구』 25(1). 167-192.

윤진숙 (2007).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8(4). 243-261.

Hampton, J. (1998) *Political Philosophy.* Boulder: Westview Press.

Hart, H. L. A. (1961) *The Concept of Law.* Oxford: Clarendon Press.

Hohfeld, W. N. (1917).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Yale Law Journal* 26(8). 710-770.

Pettit, P. (1991).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ettit, P. (1998). “Reworking Sandel’s Republicanism.” *Journal of Philosophy.* 95(2), 73-96.

Pettit, P. (1999).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ettit, P. (2012). *On The People’s Te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ttit, P. (2013). “Two Republican Traditions.” Niederberger & Schink eds. *Republican Democracy: Liberty, Law, and Poli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faffenzeller, S. (2010). “Conscription and Democracy: The Mythology of Civil-Military Relations.” *Armed Forces & Society* 36(3). 481-504.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az, J. (1986). *The Morality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usseau, J. J. (1762). *On the Social Contract.*

Sandel, M. (1996/2012). *Democracy’s Discontent*, 안규남 역, 민주주의이 불만. 파주: 동녘.

Seungsook Moon (2002). “Beyond Equality Versus Difference: Professional Women Soldiers in the South Korean Army.” *Social Politics* 9(2). 212-247.

Simmons, A. J. (1993). *On the Edge of Anarchy: Locke, Consent, and the Limits of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nyder, R. C. (1999). *Citizen-soldier and Manly Warriors: Military Service and Gender in the Civic Republic Tradition.* Lanham, ND: Rowman & Littlefield.

Snyder. R. C. (2003). “The Citizen-soldier Tradition and Gender Integration of the U.S. Military.” *Armed Forces & Society*, 29(2). 185-204.

Viehoff, D. (2014). “Democratic Equality and Political Author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42(4). 337-375.

Waldron, J. (1984). *Theories of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nar, L. (2005). “The Nature of Righ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3). 223-253.

연구의 동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 학문, 특히 세속적인 일반 학문은 무엇을 연구주제로 삼을 때 기독교 학문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연구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연구의 내용, 연구의 자세, 또는 연구의 동기인가?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중요하다면, 이 연구는 기독교 학문적 연구가 아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치철학적 근거를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학문적 연구가 될 수 있겠는가? 여성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곧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연구의 목적이 일종의 성경적 가치인 성실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가? 성실함은 성경만이 말하는 고유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는 기독교 학문적 연구가 될 수 없다.

이 연구의 주제가 정의로운 사회,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드러나는 연구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의 정당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의 성취에 일부분 공헌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왜냐하면 그 공의는 예수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이 연구는 기독교 학문적 연구가 될 수 없다. 학문의 특성상 이 연구는 철저히 인간의 이성적 추론, 판단, 논증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기독교 학문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철저히 부인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인간의 믿음이 발휘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 드러난다.

기독교 학문적 연구는 '왜'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때 성립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반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은 예수뿐이다. 그 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주권에 의해 지배당하고, 예수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숨겨질 뿐이며 바로 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이용된다. 그렇게 지배당하고 숨겨진 인간, 즉 크리스천은 인간적 활동인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크리스천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지배를 당했고 그 영광 안에 이미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권과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학문을 한다. 또는 그 주권과 영광과 그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학문을 한다.

여성의 국방의무를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이 연구는, 인간은 기껏해야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해야 행복할 수 있다거나, 자기가 입법하고 모든 사람이 입법한 법의 지배만이 진정한 자유의 조건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법

의 지배만 받아야 자신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입장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비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반대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과녁을 향해 우리가 쏜 인간의 지혜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